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1.12.2.
행정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1년 11월 17일 마포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22일

다. 상정일자 : 제16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(2011년 12월 2일)
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□ 제안설명자 : 지역경제과장 김영남

가. 제안이유

동 조례안은 종전의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 2010. 7. 1일 법률 제9887호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명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도 관련 조례명 및 용어 등을 변경하여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임

3. 검토보고 (전문위원 명금길)

동 조례안은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이
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법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 제명을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」로 개정하고, 조문 중 “재래시장”이라는 용어를 “전통시장”으로 용어를 전부 변경하며, 일부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알맞게 변경하려는 것으로서, 관련 법령에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구 조례규칙심의회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법제 사무처리규칙」 제6조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사항 : 없음